

## 2019년 공탁법 문제 및 해설

**【문31】**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2019년 법무사)

- ①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으로서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탁관이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할 수는 없다.
- ②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 ③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건물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해설】** ①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7. 4. 28. 2016다277798).

**【정답】** ①

**【문32】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관이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를 받고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②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사건이라도 국고귀속 전이라면, 공탁관은 공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④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공탁사건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공탁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 ⑤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해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수입 납부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③

**【문33】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③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 ④ 매수인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매도인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해설]** 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정정의 효력이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85누280, 71다 874)가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것으로 공탁하였다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수용개시일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그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정신청은 사실상 공탁관이 수리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⑤

**【문34】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가능하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④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여 피공탁자를 일부 삭제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고,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9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

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정답] ③

**【문35】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후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내용이다(모두 개별 사안임).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2019년 법무사)**

- ㄱ.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면서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乙이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甲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A ).
- ㄴ. 만약 위 사안에서, 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고, 甲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乙이 변심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B ).
- ㄷ. 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 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甲은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C ).
- ㄹ. 甲은 乙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가 도래하자 甲은 위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후 甲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D ).
- ㅁ. 甲(피고)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 1,000만 원을 채권자인 乙(원고)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보다 적은 500만 원의 지급을 선고하자, 그 차액에 대하여 甲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E ).

- |   | A  | B  | C  | D  | E  |
|---|----|----|----|----|----|
| ① | 있다 | 없다 | 있다 | 있다 | 있다 |
| ②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 ③ | 없다 | 없다 | 없다 | 있다 | 있다 |
| ④ | 없다 | 있다 | 없다 | 없다 | 없다 |
| 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해설]** ㄱ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

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할 수 있다. ㄷ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는 피공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행위 자체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 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공탁관은 甲의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ㄹ 민법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489조 2항). 이 경우 질권과 저당권은 변제공탁의 성립으로 당연히 소멸되므로, 공탁 후에 질물이 반환되었는지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변제공탁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 489조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공탁관은 甲의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ㄴ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청구가 아니라 공탁법상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즉, 공탁이 성립된 후에 공탁원인이 소멸하면 공탁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9조 2항). 여기서 “공탁원인의 소멸”이라 함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인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 선고부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는 확정적 변제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95다15827).

[정답] ④

**【문36】공탁관의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9년 법무사).
- ② 전자신청 사건에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③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권리승계인이다.
- 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에는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처분이 모두 포함된다.

[해설] 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공탁선례 20112-1).

[정답] ⑤

**【문37】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 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 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 ②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일부 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 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④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답] ④

**【문38】**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법무사)

- 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 ㄴ.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 ㄷ.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 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ㄹ. 위 ㄷ. 의 경우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것이라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ㅁ.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ㄹ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248조 1항 단서 및 20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ㅁ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규칙 58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 4. 12. 2004다20326. 2012. 5. 24. 2009다99112 등).

**[정답]** ②

**【문39】**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 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제3채무자 甲이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 ③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무자 乙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丙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채무자 乙은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가압류채권자 丙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었다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없더라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문40】**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배당액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배당금수령채권이 단일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 ②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없다.
- ④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없다.
- ⑤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확정된 전부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④ 이 경우 공탁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이미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도 가능하지만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되었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248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

을 하여 배당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추심권자나 전부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7)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법원공무원교육권 공탁실무 2017년 269면 참조).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정답] ⑤

**【문41】공탁물의 보증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①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보증지급의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⑤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문42】**외국인, 재외국민과 관련된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 ㄴ.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이 공탁신청 시에는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 ㄷ.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으며, 그 위임장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ㄹ.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 ㅁ. 공탁관은 공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으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모두 옳은 설명의 지문임

[정답] ⑤

**【문43】**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한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9년 법무사)

- ①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으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
-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 ③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성립된 후에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전채권 중 일부만 공탁할 수 있다.

[해설] ①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 요건도 갖추지 않아 변제공탁으로도 볼 수 없어 그 공탁절차상의 취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배당재단에 포함시켜 배당법원의 관리하에 두는 것은 압류채무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공탁절차는 변제공탁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않아도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1건의 공탁신청이 가능하며, 그 공탁신청절차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모두 적용된다. ②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만을 집행공탁하는 경우 공탁한 때에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고(민집 252조), 사유신고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어(민집 247조 1항)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확정되고 공탁신청 당시에는 피공탁자가 있을 수 없어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공탁통지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고, 다만 실무상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 ③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 공탁을 하게 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공탁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되므로,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압류가 실효되더라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의 방법으로만 지급이 가능하고,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갑의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민사집행법 248조 3항에 따른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각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으로 확장되므로, 그 채권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문44】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법무사)**

- ㄱ.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확정일자의 선후가 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 ㄷ.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 ㄹ.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닌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 ㅁ.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해설]** 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도달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에 선후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

**[정답]** ④

**【문45】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에 미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해방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전부채권자에게 공탁금에 대한 모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바로 출급청구할 수 있다는 출급청구권설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금화명령설을 따르고 있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실무상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가압류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3자의 해방공탁을 인정한다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공탁한 제3자가 갖게 되어 나중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갖게 되어도 공탁자인 제3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해방공탁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④ 가압류집행이 있는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룰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대결 2001마6620) 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지급에 같음하여 전부명령상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탁일로부터 위 전부명령이 제

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정답] ③

**【문46】공탁물의 수령·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의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1/2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설】** ②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2. 1. 12. 2011다84076).

[정답] ②

**【문47】**다음 중 공탁금지급청구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019년 법무사)

- ㄱ.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 ㄴ.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문)
- ㄷ.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ㄹ.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④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⑤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러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문48】**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나,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 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⑤

**【문49】공탁금지급청구인이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법무사)**

- ① 공탁관이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지급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서를 1통 교부한다.
- ②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 ⑤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해당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문50】변제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9년 법무사)**

- ①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금 회수청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③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①공탁소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나 이익유보 표시는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청구 및 이익유보 사유”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 12조와 상업등기법 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정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보며,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 3항, 4항).

[정답] ③